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방안

최선경*

Improvement plan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for visually impaired

Sun-Kou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접근성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적 다양성을 개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제로서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상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ome implications affected from that right to information access, among them that make up the core Web accessibility stipulate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at excepted visually impaired masseur,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diversity in present. Through that sought policy suggestions about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revision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for achievable professional diversity as a basic mechanism.

키워드

The Visually Impaired, Right to Information Acces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장애인차별금지법

1. 서론

시각장애는 장애유형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구직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유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보고용이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중

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보고용제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뿐이며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1913년 조선총독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제도는 2006년 헌법재판소가 ‘비맹제의 기준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내림으로써 유보직종으로써 존폐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시각장애인들의 ‘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sun@silla.ac.kr)
접수일자 : 2013. 08. 26

심사(수정)일자 : 2013. 09. 23

게재 확정일자 : 2013. 10. 21

존권위협'에 대한 저항과 현재의 판결 후속조치로 보
 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안마사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으로 규정하여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유보직종
 으로서 재규정하기로 한 상태이다[1].

문제는 유보고용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의 중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마업 이외의 적합
 직종을 개발하려는 각 부처 간 노력이 둔화되어 있고,
 복지관등 직업재활 시설 현장에서는 이 점을 개선하
 고자 다른 직종에 대한 훈련과 개발을 시도하여도 시
 각장애인 개인의 호응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한, 안마업 동종업종 내의 동일 장애유형간 경쟁, 서
 비스 질에 대한 논란, 낮은 고용의 질, 시각장애인 직
 종개발이나 직업관련 연구의 소홀이라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이중적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16][19].

이러한 상황 속에서 IT 분야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의 다양성확보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
 초적인 방안이 된다. 다양한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시
 력과 이동능력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이 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재활보조기구를 통해서 안마사 이
 외의 보다 다양한 직업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제는 웹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접근성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어
 떤 서비스나 시설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이용이 가
 능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웹 접근성이란 웹에서 접
 근이 허락된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 불편함 없이 이
 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7].

이러한 웹접근성은 이용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크다. 접
 근 불가능은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 상품의 복잡
 한 설계, 그래픽 인터페이스, 대체 입력이 제공되지 않
 는 터치스크린과 포인팅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가상적
 인 환경들, 음향 입출력,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적 시스
 템 등 다양한 접근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다[2]. 이러한
 장벽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
 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인한 접근 불가능성은 시각장애
 인들을 '이중적 장애(double-handicap)'의 상황에 놓이
 게 하는 것이 된다[12]. 따라서 웹 접근성의 확보는 교

육 및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권리
 로 간주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웹접근성을 명시한 법
 이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보접
 근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의 인권향상
 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정보접근권은 시각장
 애인에게 다양한 IT분야를 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오늘날 다양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란 시각장애인으로서 하여금 정보통신을 활용
 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한편, 환경 체계의 정
 보통신과 구성체적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적용시키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0].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
 른(이하 "장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접근성이 시각
 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적 다양성을 개진해 나
 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적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제로서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상의 보완점을 시사 하고자 한다.

II. 시각장애인 웹접근성과 직업재활 현황

유보고용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
 해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유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일조해왔다. 그
 로인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1%로 전
 체 장애인 38.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안마업의 유보고용제도에 따른 안마직종에서의
 고용 비율과 전체 시각장애인의 약 60%를 점하는 6
 급 경도시각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감안한다면 안마 이
 외의 직종과 일반사업체에 대한 시각장애인 고용상황
 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19]. 안마사 이외에 적
 합 직종 형성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형성 및 뿌리내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16].

또한 직업다양성 확보를 위한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최근까지의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직업만족도 및 정규직 영향 요인[17][19], 진로등과 같은 대학생활적용 실태 [6][9] 정도가 발표되고 있다. 물론 웹 접근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14][13][8],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시각장애인의 인권 및 삶에 관련된 법적개선 관련 연구 [10][21] 역시 다루어져 왔으나 매우 저조한 연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에 시행된 장차법의 정보접근성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천현장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종개발을 위한 현장서비스 역시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관련 법규는 정보소관부처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노동부 소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 교육인적자원부 소관(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교육)으로, 소관부처의 직업재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마관련 종사자 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거처도록 직업교육훈련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전문 직업 교육훈련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 및 고용유지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2012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청각, 신장,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 반면, 근로 근속기간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임시직이거나 계절적 일의 완료 또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원인이라고 응답한 것을 봐도 이들의 고용형태가 일시적이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취업유형은 제조업,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 농업·임

업·어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7].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보접근권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차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동법 제 21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 14조와 별표 3에 의하면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행위자의 유형별로 최소 1년부터 시작하여 차등 적으로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013년 8월 현재 아직은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한 국내의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10].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처우와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측면이 강하다. 장차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장차법에서의 정보접근권과 정보제공이라는 공통적 맥락을 갖고 있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권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수혜의 차원에서 제정·시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및 실행되었기 때문에 권리의 중심체이자,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의 장차법의 취지와 출발점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차법은 미국, 영국 등 복지선진국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 20조는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들의 접근성을 강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 21조 제 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전자정보에 차별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장애인관련 법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권리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권리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장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 불이행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는 사항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를 금지한다는 사항이다(제4조 제1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를 어길 시에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된다는 사항이다(제18조제3항).

문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분 혹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있다. 무엇이 직접차별이고 무엇인 간접차별인가, 무엇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인가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 공공기관 혹은 직장에서 웹을 사용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직접차별인지 간접차별인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미의 불이행인가가 불명확해 진다. 기준을 시각장애인 입장으로 두었을 때,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직업적 차별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직접차별이라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접근하려는 공공시설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보면 ‘배려’의 부재일뿐이다[10].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지극히 장애인의 입장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차별의 마지막 유형인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다분히 비장애인 혹은 공공기관 중심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되어있다(제4조 제3항). 즉 장애인에게 웹접근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단순한 권장사항이 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구제에 관한 장차법의 법적 효력은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셋째, 장차법의 정보접근권이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구직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 할 때 웹접근성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출한 웹사이트를 제공하거나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웹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누리는 듯 하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편의는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혼자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보다는, 이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인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을 도우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율성과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 시설 및 직장 등에서 웹 사용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절차가 미비하다.

IV. 결론 및 함의

시각장애인은 유보직종인 안마외의 다른 직업군을 모색하려해도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안마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외 계층이다[22].

이와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접근권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종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접근권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웹접근성 부분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진로모색의 기초적 단계이지만, 주로 비장애인 및 공공기관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이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장차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이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제수단의 구체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Medical Law. Vol. 9386
- [2] Byeong-hwa Kang, Hae-gyun Lee & Jung-hyun Kim,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Ability to Use Computer of visually Impaire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8, No. 2, pp. 77-111, 2012.
- [3] Sung-ju Kang & In-jae Hwang, "Screen Reader Program Interface for Blind Persons". Bull. Sci. Ed. Vol. 20, No. 1, pp. 55-69, 2005.
- [4] Dong-ki Kim,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R&D of Korea Social Welfare, Vol. 13, pp. 83-110, 2005.
- [5] Myung-soo Kim, "Affirmative Action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Visually Disabilities",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6, No. 1, pp. 35-70, 2005.
- [6] Mi-sun Kim,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on University Life: over the right to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8, No. 4, pp. 97-117, 2012.
- [7] Joo-hyeon Kim, "A Study on the Accessibility of Designing Websites : focusing on visually impaired people",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6, No. 3, pp. 53-61, 2005.
- [8] Jae-ha Choi & Yang-taik Yoon, "A Recommended Guideline of Mobile Internet User Interface for Visually Handicappe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 Information, Vol. 9, No. 2, pp. 131-138, 2004.
- [9] Ho-yeon Kim, "A Survey of the Factors on Major Decision & Vocational Preparations of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9, No. 1, pp. 1-23, 2013.
- [10] K.S. Park, Kha-yeun Kim, Seong-hun Kim, Son-hee Yang & Pil-kyu Chae, "The Blind's Web Accessibility: A Comparative-Legal Analysis with a Focus o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Korea Law Review, Vol. 61, pp. 131-171, 2011.
- [11] Joo-hyun Park & Han-young Ryoo, "Emotion of People with Visual Disability for Enhancing Web Accessibility",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Vol. 11, No. 4, pp. 589-598, 2008.
- [12] Yeon-ki Son, "The disabled & Welfare Info-Communication",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Report of Information Policy, 1997.
- [13] Yeong-u Son, "Development of Standardized Web Site for the Visual Disabled",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6, No. 3, pp. 19-26, 2003.
- [14] Seung-hun Song, Doo-soon Park & Min Hong, "Development of Contents to Improve the Web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11, No. 2, pp. 45-53, 2008.
- [15] Jae-yeol Ahn, "IT Vocational Training of Visually Impaired",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Vol. 13, No. 3, pp. 20-27, 2006.
- [16] Mi-jeong Lee, Young-mi Kim & He-kyung Park, "A Study on the Methods of the System Improvement for Securing Variety of Job Selection of the Blind Person",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pp. 9-13, 2009.
- [17] Jee-sook Lee & Yun-jin Oh, "An empirical study on vocational motivation, relationship skills, and job satisfaction among the visually impaire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8, No. 3, pp. 181-201, 2012.
- [18] Chung-hwan Lee, "A Study of Leisure Attitudes and Leisure Constraints among the Blind Students", Journal of Sports Culture & Science, Vol. 14, pp. 39-47, 2008.
- [19] Tae-hoon Lee,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Wage and Regular Employment of Workers with Visual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8, No. 1, pp. 43-58, 2012.
- [20] Hyun-seop Lim, " The Visually Impaired's Information Actual Use and Activation Plan", Master's degree thesis,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2.
- [21] Min-seok Choi, " Right to Information Access & Occupational freedom of Visually Impaired",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Vol. 4, No. 1, pp. 397-413, 2007.

- [22] Song-min Kim, "A Development of the Business processing unit for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1, pp. 141-147. 2012.

저자 소개



최선경(Sun-Koung Choi)

2001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2006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박사)

2007년~현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사회복지, 정보접근권